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1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 송언석 • 이종욱 • 이인선

이종배 • 구자근 • 김태호

최은석 • 박수영 • 박준태

김상훈 · 신성범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 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 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출연금에 관한 적용 례) 제8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2028년 12월 31일까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신 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